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발 의 자 : 김동울 의원 (찬성자 12명)
- 나. 의안번호 : 제 1240호
- 다. 발의일자 : 2016. 5. 31
- 라. 회부일자 : 2016. 6. 2

2. 제안이유

화재경계지구 제도의 정비를 위해 개정된 소방기본법(2016. 1. 27 시행) 규정을 반영하고, 북촌, 서촌, 인사동 일대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, 서울시 한옥밀집지역의 화재예방 및 경계를 강화하고 소방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한옥밀집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권자는 시장임을 명시함(안 제4조).
- 나.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한옥밀집지역의 소방대상물에 대한

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.

라. 소방재난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(안 제5조제2항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소방기본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

(1) 신구조문대비표 : 원안참조

(2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(5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원안참조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,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한 「소방기본법」의 개정(2016.1.27.)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조항 신설과 화재경계지구 지정권자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상위법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■ 한옥밀집지역 및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

- 현재 현행 「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2조1)에 따른 한옥밀집지역은 서울시내 10곳이 지정되어 있으며, 이 중 「소방기본법」 제13조2)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은 인사동, 북촌, 경복궁 서측 등 3곳임. ([표1] 참조)

-
- 1) 「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
 2. "한옥밀집지역"이란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(이하 "한옥위원회"라 한다)의 자문을 거쳐 지정·공고한 지역을 말한다.
 - 2) 「소방기본법」 제13조(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(火災警戒地區)로 지정할 수 있다.
 1. 시장지역
 2. 공장·창고가 밀집한 지역
 3.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
 4.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
 5.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
 6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
 7. 소방시설·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
 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·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

[표 1] 한옥밀집 지역 및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

연번	한옥밀집지역	위치	면적(m ²)	한옥비율 (한옥/전체)	비고
1	인사동	종로구 인사동 관훈동 일대	122,200	33.5% (158/471)	화재경계지구 (1개소)
2	북촌	종로구 가회동, 삼청동 일대	1,076,302	44.3% (1,233/2,782)	화재경계지구 (2개소)
3	경복궁 서측	종로구 체부동, 효자동 일원	582,297	31.3% (668/2,136)	화재경계지구 (1개소)
4	돈화문로	종로구 권농동, 와룡동 일대	137,430	20.4% (146/715)	
5	운현궁	종로구 견지동, 운니동 일대	226,134	32.9% (121/368)	
6	앵두마을 일대	성북동1가105-11	31,245	21.4% (36/167)	
7	선잠단지 일대	성북동 62-17	5,868	45.4% (20/44)	
8	성신여대 주변	성북구 보문로30라길 21일대	14,097	51.61% (48/93)	
9	정릉시장 주변	성북구 보국문로11길 28일대	22,545	18.94% (25/132)	
10	보문동 일대	성북구 보문로13라길 10일대	23,305	23.46% (38/162)	

■ 주요골자별 의견

가. 화재경계지구 정의 관련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, ‘화재경계지구’ 정의에 대한 근거관련 법령조항을 「소방기본법」 제13조에서 「소방기본법」 제13조제1항으로 구체화 한 것으로 별 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
나. 화재경계지구 지정권자 명시(안 제4조)

- 안 제4조는,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과 관련해 그 지정권자를 시장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, 현행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근거 법령이 안 제2조제2호의 “화재경계지구”정의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안 제4조에서는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 역시 별다른 문제는 없음.

다. 소방특별조사 실시조항 신설(안 제5조)

- 안 제5조는, 「소방기본법」 제13조제3항³⁾의 개정(2016.1.27)에 맞추어 한옥밀집지역 내에 소방대상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‘소방특별조사’를 실시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.
 - 이는 보존가치가 높은 한옥밀집지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방시설 상시 작동유지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.

3) 「소방기본법」 제13조(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)

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·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27.>